

장례포(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2항 관련)

관 직	조 기(반 장)		조례포		비 고
	계 양 장 소	기 간	발 사 부 대	발사방법 및 시간	
대통령	1. 전국, 외국주재각 기관	공식발표익일8시부터 30일간	사단이상의 사령부 각 함정 또는 포대	1. 공식발표 익일8시부터 30분마다 1발씩 조례포를 발사	조례포 및 발인포의 발사수는 예포수에 의한다.
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자	2. 각군중대급이상의 부대·함정·선박			2. 장의당일영결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에 1분마다 1발씩 발인 포를 발사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각 군 중 대 급 이 상 의 부 대 · 함 정 · 선 박	공식발표 익일8시부터 14일	사단이상의 사령부 각 함정 또는 포대	장의당일 영결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에 1분마다 1발씩 발인포를 발사	발인포의 발사수는 예포수에 의한다.
지휘관인 장성급장교	관하부대	사망일로부터 장의당일 일몰시까지	예하포병부대·해군에 있어서는 예하함정 또는 포대	장의당일 영결식이 끝나고 발인할 때에 1분마다 1발씩 발인포를 발사	
지휘관이 아닌 장성급 장교	소속부대	장의당일 일몰시까지	소속부대의 포병부대 해군에 있어서는 소속함정 또는 포대		
장성급 장교아닌 단	소속부대	장의당일 일몰시까지			
대의 지휘관 기타의 장병	소속부대	장의식 거행간			